제937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항만운송(관련)사업의 등록기준 변경(강화) ○ 현행 항만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항만운송사업(항만하역업, 검수사업등) 및 항만운송관련사업(항만용역업, 선박연료공급업, 컨테이너수리업 등)의 등록기준을 개정 ○ 항만하역업 – (급지) 항만간 급지 조정 – (시설평가액) 각 항만별 항만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필수 하역장비 가액 최소치를 반영하여 현실화, 1급지(현행 10억원 이상)는 15억원 이상으로 3급지(현행 1억원 이상)는 2억원 이상으로 강화 ○ 검수사업 – (급지) ‘컨’ 물량 다수 항만(1~2급지)과 그 외 항만(3~4급지)에 대해 물동량 크기에 따라 각각 2단계로 나누어 구성(총 4개 급지) – (인력) 화물별 검수사 소요인력 차이를 반영하여 급지별로 산출하되, 디지털화·자동화 등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체적 규모는 하향, 2급지 인력기준(현행 3명이상)은 12명이상으로 상향	1.비중요 2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항만용역업 – (급지) 항만간 급지 조정 – (선박기준) 3급지 선박기준 급수선 10톤이상으로 강화 ○ 선박연료공급업 – (선박기준) 2급지는 연료공급선 40톤이상, 3급지는 연료공급선 20톤이상으로 강화 ○ 컨테이너수리업 – (면적기준) (1급지) 작업장 면적기준 강화 ▶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4조 2.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강화(강화) ○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강화 – (급지) 항만간 급지 조정 – (자본금) (1급지, 2급지) 2억원 이상(현행 1.5억원 이상), (3급지) 1.5억원 이상(현행 1억원 이상)으로 강화 – (노동력) (2급지) 12명이상(현행 3명이상)으로 강화 ▶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집적정보 통신시설(데이터센터) 보호조치 강화(강화) ㅇ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(데이터센터사업자)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, 서비스 중단 시 보고 의무와 절차를 강화 – ① UPS의 원격바이패스 기능 확보, 유류탱크 방화벽 분리 설치, 전력공급 이중화 완비 등 전력공급의 연속성 강화 – ② 리튬배터리실 분리설치, 배터리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, 전지관리시스템 및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 병행 운영 등 예비전력설비 안전관리 강화 – ③ 지하공간의 주요시설에 대한 물막이판 및 배수시설 설치, 적정 소화설비 구비, 급속 배기장치설치, 모의훈련실시 등 재난 보호조차 강화 ▶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4조,전체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(보건복지부)	1.지역상담기관의 자격(신설) ㅇ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될 자격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 규정 – 3년 이상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한부모가족시설, 사회복지법인,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▶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2.지역상담기관 지정취소 기준(신설) ㅇ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행정처분 기준(업무정지 기간과 지정취소)을 위반행위 횟수별로 규정 ▶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	1.비중요 2.비중요
4	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(보건복지부)	1.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의 설치·운영기준(신설) ㅇ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설치 기준으로 시설기준 및 설비 기준, 인력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을 정하고, 운영계획 연 1회 정기 보고 등 운영 기준을 규정 ▶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(경찰청)	1.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기한(강화) ㅇ (운전면허 갱신 · 적성검사 연기기한 제한 강화) 면허 갱신 ·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으로 제한하고, 수시적성검사는 긴급성이 요구되므로 1년으로 제한 ▶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,제57조 2.운전전문학원 수료증 및 졸업증 유효기간(강화) ㅇ (운전전문학원 수료증 · 졸업증 유효기간 신설) 운전전문학원 수료증 · 졸업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 ▶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	1.비중요 2.비중요
6	소음・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엔진소음차단시설 등의 임의변경 없는 자동차를 수시점검 면제대상에서 제외(강화) ㅇ 운행차 소음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수시점검 제외 대상에서 ‘엔진소음차단시설 등이 임의로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떼어지지 아니한 자동차’ 를 삭제 ▶소음・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호스피스 병상 등 관련 자료 제출(신설)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규정 - 사용 가능한 호스피스 병상 관련 정보 - 호스피스 이용신청 후 대기 환자 관련 정보 - 그 밖에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정보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▶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3	1.비중요